

☎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 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정책보험국장 최윤배[6530]/ 보험팀장 김기성[6571]/ 담당 백영기[6574]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5-340호

시행일자 2015. 6. 2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안내

1. 관련근거 : 가. 복지부 보험약제과-3538호(2015.6.25.)

나. 대의협 제813-2415호(2015.6.23.)

2. 우리협회가 건의한 ‘메르스 관련 타 의료기관 처방 심사에 관한 협조 요청’ 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폐쇄 요양기관 외래환자의 약제처방시 급여 조건 완화 조치를 통보하여 온 바,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사항을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메르스로 인하여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제는 동일 상병에 동일 급여약제를 처방 시 인정한다.
- 다만,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,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.
- 이 경우,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요양기관 명칭(기호), 환자의 상태, ‘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’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, 원래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 상병을 기재한다.

※ 적용일 : 2015년 5월 20일 진료분부터. 끝.

대한의사협회



“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”

수신처 : 16개 시도지사회장, 26개 학회장, 20개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.